

형 법

<총 평>

- ★ 2015년 경찰채용(순경) 1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 ★ 이번 시험에서는 총론 9문제, 각론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비중은 최근 2-3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을뿐더러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형법각론에만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 [총론부분]에서는 ① 죄형법정주의, ②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③ 인과관계, ④ 정당방위, ⑤ 책임능력, ⑥ 형법상 착오(종합), ⑦ 미수범(각론의 구성요건상 미수범 종합, 각론 문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⑧ 교사범, ⑨ 집행유예 등이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① 살인의 죄, ② 강제추행죄, ③ 명예훼손죄, ④ 주거침입죄, ⑤ 친족상도례, ⑥ 강도죄, ⑦ 사기죄, ⑧ 횡령죄, ⑨ 장물죄, ⑩ 공문서 부정행사죄, ⑪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출제되었다.
- ★ 예년에 비해 각론 중 ‘재산죄’ 부분이 5문제가 출제되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만, 내용이 모두 기존의 기출되었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번 시험 역시 ‘대부분’ 판례로만 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변함이 없다(정확하게는 81개의 지문 중 이론 내지 조문으로 구성된 6개의 지문을 제외한 75개의 지문이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고득점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험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등한시해도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해야만 한다.
- ★ [평가] 출제 난이도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되어 진다. 올해 초에 있었던 경찰승진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형편없이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 출제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출제당국의 난이도 조정은 실패했다고 보인다. 현재 형법이 ‘선택과목’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경찰 시험에서 형법과 형소법이 선택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난센스다!!), 지나치게 쉬운 문제의 출제는 결국 대한민국 경찰 수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출제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험 난이도 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시험에서 형법 과목을 가지고 판단하면, 85-90점을 득점한 경우에는 보통, 95-100점을 득점한 경우에는 다른 수험생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 ㉤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라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① ㉠(O) ㉡(O) ㉢(X) ㉣(X) ㉤(O)
- ② ㉠(O) ㉡(O) ㉢(O) ㉣(X) ㉤(O)
- ③ ㉠(X) ㉡(O) ㉢(X) ㉣(O) ㉤(X)
- ④ ㉠(O) ㉡(X) ㉢(X) ㉣(X) ㉤(O)

**정답**

[2015 경찰채용]

**해설**

- ㉠(O). 대판 1997.5.30, 97도597. <송형각 35면><기출>
- ㉡(O). 대판 1999.9.17, 97도3349. <송형총 33면><기출>
- ㉢(X).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 어떠한 행위가 위 “활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활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5.29, 2008도1857). <송형총 23면><기출>
- ㉣(X).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판 2013.6.27, 2013도4279). <최신판례특강자료 95면> <기출>

㉔(○). 대판 2011.7.14, 2009도7777. <송형총 51면>

**문 2.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법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부분적 긍정설(절충설)의 입장이다.
- ②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③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 [2015 경찰채용]

- 해설**
- ①(○). 타당하다. <기출>
  - ②(○). 대판 1984.10.10,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송형총 106면> <기출>
  - ③(×). ...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95.7.28, 94도3325). <송형총 111면> <기출>
  - ④(○). 대판 2005.11.10, 2004도2657. <송형총 111면> <기출>

**문 3. 인과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② 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 ③ 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강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파열이 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의사 乙의 과실에 의한 수술지연이 공동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④ 甲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학교법인 乙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정답** ② [2015 경찰채용]

- 해설**
- ①(○). 형법 제17조. <송형총 131면> <기출>
  - ②(×). 과실범의 경우 결과발생을 요하는 결과범이므로, 행위자의 과실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결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는 고의범과 과실범에 원칙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에 따라 과실범의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범(기수)이 성립하고, 만약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의 미수가 되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된다. <송형총 131면, 172면 참조>
  - ③(○). 대판 1984.6.26, 84도831. <송형총 134면> <기출>
  - ④(○). 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1985.5.14, 84도2751). ★ ...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위 학교법인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전매사실을 알았다하여 그들과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와 위 법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문 4. 정당방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한다.
- ②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 ③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 ④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1992.12.22, 92도2540. <송형총 210면><기출>  
 ②(○). 대판 1991.9.10, 91다19913. <송형총 213면>  
 ③(×).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8, 2000도228). <송형총 211면><기출>  
 ④(○). 대판 2001.5.15, 2001도1089. <송형총 216면><기출>

**문 5. 심신장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관별능력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③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1.26, 98도3812). <송형총 286면><기출>

- ②(○). 대판 1992.8.18, 92도1425. <송형총 283면><기출>
- ③(○). 대판 2013.1.24, 2012도12689. <최신판례특강자료 53면><기출>
- ④(○). 대판 1992.7.28, 92도999. <송형총 292면><기출>

**문 6. 형법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불능미수의 문제는 사실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지만, 환각범의 문제는 법률의 착오가 반전된 경우이다.
- ②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48시간 동안 감금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고 감금하였다더라도 책임설에 의하면 감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④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된다.

**정답**

④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타당하다. <송형총 352면><기출>  
 ②(○).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사례로서 통설에 의하면 이는 금지착오에 해당한다. 금지착오의 경우 책임설에 의하면 그 착오가 고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나아가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감금죄의 죄책이 인정된다. <송형총 300면><기출>  
 ③(○). 대판 2000.4.21, 99도5563. <송형총 299면><기출>  
 ④(×).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치욕은폐 등’의 동기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소가 아니라 특별한 책임표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며,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한다( ). 따라서 i) 책임감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착오한 경우(예컨대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잘못 알고 치욕은폐의 동기로 살해한 경우) 그 주관적 표상에 따라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ii) 반대로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역시 그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송형총 156면; 송형각 18면><기출>

문 7. 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타인의 주머니에 몰래 손을 넣은 경우는 비록 그 주머니 속에 실제로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더라도 절도미수죄를 구성한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는 협박미수죄를 구성한다.
- ③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것만으로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더라도 주거침입미수죄를 구성한다.
-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를 구성한다.

**정답** [2015 경찰채용]

**해설** ①(○). 대판 1986.11.25, 86도2090. <송형총 357면><기출>

②(×).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77면><기출>

③(×).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대판 1995.9.15, 94도2561). <송형각 206면><기출>

④(×).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9.14, 2006도4127). <송형각 314면><기출>

문 8. 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 ②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④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하여야 한다.

**정답** ④ [2015 경찰채용]

**해설** ①(○). 대판 2013.9.12, 2012도2744. <최신판례특강자료 58면><기출>

②(○). 대판 2012.11.15, 2012도7407. <최신판례특강자료 59면>

③(○). 대판 2012.11.15, 2012도7407. <최신판례특강자료 59면>

④(×).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판 1991.5.14., 91도542). <송형총 423면><기출>

문 9. 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시 받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정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③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형법 제62조의2 제3항. <송형총 558면><기출>
- ②(○). 대판 2003.12.26, 2003도3768. <송형총 553면><기출>
- ③(×).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3조 : **집행유예의 실효**). <송형총 561면><기출>
- ④(○). 대판 2007.2.22, 2006도8555. <송형총 556면><기출>

문 10.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 ② 사람을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 ③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정답**

③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2007.6.29, 2005도3832. <송형각 11면><기출>
- ②(○). 대판 1997.7.25, 97도1142 등. <송형각 14면><기출>
- ③(×).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대판 2002.2.8, 2001도6425). <송형총 149면><기출>
- ④(○). 대판 1959.9.1. 4292형상387 등. <송형각 23면><기출>

문 11.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 ② 피고인이 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 ③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 ④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2006.1.13, 2005도6791. <송형각 116면><기출>
- ②(×).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甲을 간음하고 추행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甲을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더라도, 위 유인행위는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甲이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甲이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4.9.4, 2014도8423). <최신판례특강자료 93면>
- ③(○). 대판 2013.9.26, 2013도5856. <최신판례특강자료 91면>

<기출>

④(○). 대판 2012.7.26, 2011도8805. <송형각 112면><최신판 레특강자료 90면><기출>

문 12. 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 하지 않은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②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③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역 시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해서 특별한 친분관계도 없는 한사람 한 사람에게 비방의 말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다.

정답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0.5.16, 99도5622). ★ 결국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한편 명예훼손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송형각 135면><기출>
- ②(○). 대판 2008.2.14, 2007도8155. <송형각 134면><기출>
- ③(×). i) '진실'인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만 성립하고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이다. ii) 한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동시에 훼손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만 성립한다(특별관계, ). <송형각 153면>
- ④(×).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

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대판 1996.7.12, 96도1007). <송형각 134면><기출>

문 13. 주거침입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 불법선거운동 적발 목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에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 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 ㉣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2015 경찰채용]

- 해설 ㉠(○). 대판 2009.8.20, 2009도3452. <송형각 203면><기출>
- ㉡(×).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2]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3.28, 95도2674). <송형각 200면><기출>
- ㉢(○). 대판 1983.7.12, 83도1394. <송형각 202면><기출>
- ㉣(○). 대판 2005.10.7, 2005도5351. <송형각 204면><기출>

문 14.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 형법상의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동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정답**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11도 2170). <송형각 239면> <기출>
- ②(○). 대판 2010.7.29, 2010도5795. <송형각 239면> <기출>
- ③(×).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0.2.11, 2009도12627). <송형각 239면> <기출>
- ④(×).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송형각 241면> <기출>

문 15.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과 乙, 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甲은 망을 보고 乙과 丙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甲도 이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반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④ 피고인 甲, 乙이 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丙을 살해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丙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지만 재산상 이익이 채권자 측으로부터 甲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9.12.12, 89도1991). <송형각 278면> <기출>
- ②(○). 대판 2014.5.16, 2014도2521. <최신판례특강자료 117면> <기출>
-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송형총 189면; 송형각 563면> <기출>
- ④(×).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4.6.24, 2004도1098; 대판 2010.9.30, 2010도7405). <송형각 266면> <기출>

문 16.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입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영업주가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고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②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허위의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 ④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 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정답**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1997.9.9, 97도1561. <송형각 333면> <기출>  
 ②(○). 대판 2004.6.24, 2002도4151. <송형각 356면> <기출>  
 ③(○). 대판 1996.8.23, 96도1265. <송형각 353면> <기출>  
 ④(×).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6.10, 2010도1777). <송형각 336면> <기출>

**문 17.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2015 경찰채용]**

- 해설** ①(×).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등과 같이 원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그 행위자가 이러한 차입을 하거나 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형사적 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송형각 410면> <기출>  
 ②(○). 대판 2002.8.23, 2002도366. <송형각 420면> <기출>  
 ③(○). 대판 2007.5.31, 2007도1082. <송형각 382면> <기출>  
 ④(○). 대판 2006.3.9, 2003도6733. <송형각 423면> <기출>

**문 18.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2014 경찰채용]**

- 해설** ①(○). 대판 2011.4.28, 2010도15350. <송형각 520면> <기출>  
 ②(×). [1]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2]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

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9.4.23, 2009도1203). <송형각 511면><기출>

- ③(○). 대판 2006.10.13, 2004도6084. <송형각 510면><기출>
- ④(○). 대판 2004.4.16, 2004도353. <송형각 518면><기출>

**문 19. 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 ㉡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 ㉣ 선박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乙선박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정용 자료로서 乙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015 경찰채용]**

**해설**

-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바,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어머니, 누나)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송형각 659면><기출>
- ㉡(○).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1.4.19,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송형각 659면><기출>
- ㉢(×). 주민등록표등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주민등록법 소정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 그대로를 인증하여 사본·교부하는

문서로서 그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용도도 다양하며,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 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9.5.14, 99도206). <송형각 658면><기출>

- ㉣(×). ...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2.26, 2008도10851). <송형각 659면><기출>

**문 20.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②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 ③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인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수인(數人)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 및 기회에 이루어진 때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정답**

④

**[2015 경찰채용]**

**해설**

- ①(○). 대판 1991.5.10, 91도453. <송형각 768면><기출>
- ②(○). 대판 2002.4.12, 2000도3485 등. <송형각 762면><기출>
- ③(○). 대판 2006.1.13, 2005도4799 등. <송형각 773면><기출>
- ④(×).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송형각 774면><기출>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